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평화교육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평화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317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제정의 필요성	5
2. 조문의 구성체계	14
3. 조문별 검토	15
가. 평화교육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제5조)	15
나. 평화교육의 추진(안 제6조) 및 평화교육주간(안 제7조)	20
다. 평화교육관리위원회(안 제8조)	22
라.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9조~제11조)	25
마. 평화교육의 지원 등(안 제12조~제14조)	28
바. 부칙	3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7. 7.

3. 회 부 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
· 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다.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 주간으로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 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사.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을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의 필요성

가. 입법배경

1)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

□ 2024년 북한은 13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고, 5월에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며, 10월에는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음. 아울러, 9월에는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도 지속하였음.

□ 또한, 북한은 5월부터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6천 개가 넘는 대남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소음방송 송출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하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유발하였음.¹⁾

2)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위기 의식 저하

□ 제안이유와 같이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었고,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1) 2025 통일백서, 통일부, 16p~17p

- 또한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반복되면서 일반 국민의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²⁾,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다른 법률과의 비교

1) 「통일교육 지원법」

- 동 제정안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 북한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마련되어 있는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이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고³⁾, 제정안에서의 “평화교육”이란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

2)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 통일연구원, 95p

3)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바⁴⁾,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대부분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⁵⁾.

□ 한편 「통일교육 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평화적 통일 지향, 교육주관 설정, 기본계획 수립, 공공시설 이용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통일교육을 위한 기관 설치 및 운영, 통일교육 위원 위촉, 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정안의 조문 구성과 그 주요내용이 「통일교육 지원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통일교육 지원법과 제정안 구성 비교]

통일교육 지원법	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 지향	제3조(평화교육의 기본원칙) 평화교육은 평화정신 함양, 평화 질서 유지 지향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함	제5조(평화교육의 핵심개념) 국가는 평화교육의 핵심개념 정립
제3조의3(통일교육주관) 통일교육주관: 매년 5월 넷째 주	제7조(평화교육주관) 평화교육주관: 매년 9월 넷째 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력양성, 교재개발, 시책수립, 재정적·행정적 지원, 상호협력체계 구축, 통일	제4조(국가의 책무) 평화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교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 「평화교육 지원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최신 도덕·사회 교육과정('22.12월, 교육부)에 “평화 감수성을 길러 통일 추구, 차이 및 다양성 존중”, “남북 분단 문제 분석 후 평화의 가치 성찰” 등 관련 내용 대부분 연결되어 있음.

교육 장려	제12조(평화교육의 지원)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경비 지원 등
제5조 삭제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제6조(평화교육의 추진) 평화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자원 조달 및 집행 계획 추진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시 공공시설 이용 가능	제12조(평화교육의 지원)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경비 지원 등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 제공,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일관 설치·운영	제9조(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한 평화교육센터 지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교육 실시 등 통일관장에게 시정명령	제10조(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기본원칙에 위반한 교육 실시 등 평화교육센터 장에게 시정명령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 통일관 지정 취소	제11조(평화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 센터 지정 취소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공무원 등에게 통일교육 실시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 반영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및 실태조사, 대학 등에 통일문제 관련 학과 등의 설치 권장, 경비 지원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통일교육을 하는 자 등에게 통일교육 수강 요청	제13조(평화교육의 수강 요청 등) 평화교육을 하는 자 등에게 평화교육 수강 요청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 전문과장 개설 및 수료자에게 전문강사 자격 부여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에 대한 협력증진을 위한 통일교육협의회 설립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 활동 수행을 위한 통일교육위원 위촉	제8조(평화교육관리위원회) 평화교육사업의 심의를 위한 평화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제11조(고발 등)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고발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의무	제15조(관계 기관의 협조) 평화교육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의무
	제14조(예산의 반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산 등 반환 명령

2) 교육 관련 지원법

- ☐ 동 제정안에서 평화교육의 주무기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⁶⁾, 평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다만,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등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 통일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등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소관 부처

6)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교육부 외 타 부처임⁷⁾.

[교육부 소관 외 교육 관련 지원법 현황]

법률명	목적	소관 부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	문화체육관광부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통일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환경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농림축산식품부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기획재정부
법교육지원법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	법무부

7)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교육부장관이 아닌 타 부처 장관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소관 부처가 교육부 외로 되어 있음.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평화교육은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고, 통일교육과 내용이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동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아닌 통일부 등 타 부처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련부처 의견

1) 교육부

- 교육부는 평화교육의 내용요소가 불분명하여 관련 교육의 분석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평화교육은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통일교육과 내용이 유사하여 구별이 어려우며,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함⁸⁾.
- 또한 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의 구조 및 내용이 유사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임.

2) 통일부

- 통일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교육부는 평화교육 계획 수립, ‘평화교육주간’ 개최, ‘평화교육센터’ 지정 등 평화교육 사업을 별도

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 교육’은 세부주제로써 ‘평화와 통일’을 다루고 있고,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제1항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통일교육은 평화와 관련한 내용 또한 다루고 있음.

로 실시해야 하는데,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바(「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제1항⁹⁾),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대부분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으므로¹⁰⁾, ‘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평화교육’ 사업이 별도로 실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임¹¹⁾.

라. 소결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지속해서 고조시키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 국민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여론조사¹²⁾ 결과(2024년), 전체 응답자의 66%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이 사명임을 밝히고 있

9)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10) 통일교육주간은 '15년(제3회)부터 통일부·교육부 공동 주최하고 있고, 최신 도덕·사회 교육과정('22.12월, 교육부)에 “평화 감수성을 길러 통일 추구, 차이 및 다양성 존중”, “남북 분단 문제 분석 후 평화의 가치 성찰” 등 관련 내용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음.

11) 대구교육청은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확장·보완을 통해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12)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4년부터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여론을 측정해왔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음(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보유 여론, 통일연구원, 246p).

고, 본문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¹³⁾,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한 경각심과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평화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평화교육을 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제정안과 「통일교육 지원법」은 구성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통일교육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국가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내용이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¹⁴⁾.

13)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14) 그 밖에 대구교육청은 기존 「통일교육 지원법」의 명칭 및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통일 및 평화교육지원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확장·보완을 통해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평화교육 지원법안」이라는 제명 하에 별도의 장 구분 없이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평화교육관리위원회 구성(안제8조), 평화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안 제6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안 제9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문의 구성체계]

본칙	
제1조 목적	제9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2조 정의	제10조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제3조 평화교육의 기본원칙	제11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4조 국가의 책무	제12조 평화교육의 지원
제5조 평화교육의 핵심개념	제13조 평화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6조 평화교육의 추진	제14조 예산의 반환
제7조 평화교육주간	제1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 평화교육관리위원회	
	부칙
	시행일

3. 조문별 검토

가. 평화교육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제5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3조는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평화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평화교육의 핵심개념 정립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평화교육의 기본원칙) ①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② 평화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평화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평화와 인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평화교육의 내용이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비폭력대화 등 평화적인 소통 방식을 확산하여 일상 속 갈등예방 및 사회전반의 평화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평화교육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평화교육 교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교육의 핵심개념) ① 국가는 평화교육의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해당 개념이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 등에 반영·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평화교육의 핵심개념은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개념과 실제사례, 교육방법론,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가) 기본원칙

- 제정안에서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은 ①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는 것(제1항), ② 평화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제2항)으로 구성됨.
- 동 제정안이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¹⁵⁾에서는 ‘평화정신 함양’ 대신 ‘평화의식 함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화의식 함양’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 또한 동 제정안이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

15) 「평화교육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신(精神)의 사전적 의미는 ①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② 마음의 자세나 태도 ③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인데 반해, 의식(意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한다면 ‘평화’를 ‘대한민국의 평화’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해양과학조사법」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대구교육청은 제정안 외에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평화교육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을 추가하자는 의견임.

나) 국가의 책무

□ 제정안 제4조는 평화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7조17)에 의하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동법 제23조제2항18)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

17)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¹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는 시·도의 사무임.

-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평화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²⁰⁾.

<참조 입법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18)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20) 교육부도 동일한 의견임.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²¹⁾, 동 제정안은 평화교육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만 부과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제3항의 평화적인 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이 존재하는데 특정 의사소통 기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거나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임.

2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55p, 국회사무처

나. 평화교육의 추진(안 제6조) 및 평화교육주간(안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등 평화교육의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7조는 매년 9월 넷째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평화교육의 추진)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평화교육 연구의 진흥 3. 평화교육 인력의 양성·활용 4. 평화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5. 평화교육에 수반되는 자원 조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평화교육주간)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한다.

2) 검토의견

가) 평화교육의 추진

- 제정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이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계획수립 및 조정, 연구의 진흥, 인력의 양성·활용, 교재의 개발·보급, 자원 조달·집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수립,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교재의 보급 등 교

육 지원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평화교육 추진의 내용이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업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 의견이고, 시도교육청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이 추진되고 있어 평화교육 계획이 별도 수립될 경우 통일교육의 체계성 및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하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의 진흥, 인력의 양성·활용, 교재의 개발·보급 등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신중 검토 의견임.

나) 평화교육주간

- 제정안 제7조는 매년 9월 넷째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있는바²²⁾, 교육부는 평화교육주간과 통일교육주간이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데 별도로 실시되는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 입장임.

22)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다. 평화교육관리위원회(안 제8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8조는 평화교육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평화교육관리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3.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화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5. 평화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6. 그 밖에 평화교육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평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학계 및 언론계에서 각각 1명씩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심의기관인 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상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²³⁾.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제2항²⁴⁾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바,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정법에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법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고, 위원은 ①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1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

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제2호), ③ 평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학계 및 언론계에서 각각 1명씩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제3호)으로 구성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대구교육청은 위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평화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첩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자는 의견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연계·통합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²⁵⁾, 현재 교육부에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등 일반 교과 외 특정 분야의 교육진흥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일부를 통합 추진하고 있는 바²⁶⁾, 일관된 정부조직 관리·운영을 위해 현 시점에서는 특정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²⁷⁾.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관련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중임.

라.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9조~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9조는 평화교육센터의 지정, 제10조는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제11조는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평화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이하 “평화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화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화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평화교육센터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평화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평화교육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7)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와 같이 민간위원 위축 규모(3명)가 작고 정부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필요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제 정 안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평화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시설을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²⁸⁾에 따라

28)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여 센터의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마. 평화교육의 지원 등(안 제12조~제14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2조는 평화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제13조는 평화교육 수강 대상 등 교육부장관의 수강 요청을 규정하며, 제14조는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반환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평화교육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화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평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반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검토의견

가) 평화교육의 지원

□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²⁹⁾와 대학교³⁰⁾의 평화교육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 제12조제2항은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 입법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9)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0)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교육부는 제정안 제12조제1항과 관련하여 평화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 중 경비 지원 외에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임.

□ 행정안전부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책무로³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³²⁾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세 등을 법정 전출금으로 이미 초·중등 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원분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³³⁾.

나) 평화교육의 수강 요청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① 평화교육을 하는 자, ②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3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2)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33) 제정안 제4조에서 국가의 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평화교육을 위한 책무가 부과되면 평화교육을 위한 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수강 요청 대상이 되는 자가 불분명하며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³⁴⁾ 통일교육 수강 요청 대상자와 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 검토 입장임.

34) 「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바.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 동 제정안에서는 하위법령(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조항이 있는바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관리위원회 설립 및 평화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한 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